조계종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

10월 30일 총회서 만장일치 인준
특별회원 신설 등 회칙 개정 보고
"소통 · 대화로 종단 화합에 최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광장이 10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추대됐다.

화엄 1·2·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은 10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총회에는 총원 59명 중 47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위임, 1명이 불참했다.

앞서 불교광장 운영위원회는 올해 9월 9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회칙에는 △전·현직 교구본사 주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원 신설 △특별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회장 선출 자격 부여 △회장을 회원(정회원·특별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총회 인준으로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교구본사주지의 특별회원과 당연직 자문위원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고문단과 자문위원을 통합해 하나의 조문으로 수정했다.

운영위원회는 개정 회칙에 따라 경우 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날 총회에서 공식 추인 절차를 마쳤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경우 스님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소납을 불교광장 회장으로 추대해 줘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혜와 밝은 안목으로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광장 회원으로서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몸짓에 응답해야 한다"며 "더 많은 소통과 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기본을 세워 희망의 장정을 열어 가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의 불을 지핀다면 불조의 혜명을 올곧게 잇는 거룩한 불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불교광장이 대기대용의 종단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우 스님은 "종단과 승가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광장 회원들의 신심과 공심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혜와 행원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지리라 믿는다"며 "모든 종도의 간절한 원력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 세상과 불자들의 마음마음에 희망의 법향이 널리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염원했다.

전 회장 만당 스님의 입적 후 4개월여 만에 새 회장을 추대하고 회원 가입 문호를 넓힌 불교광장이 조직 재정비를 통해 발전적인 종책 활동을 펼칠지 주목된다.

종책모임 정법회, '선거제도 개혁 특위' 등 제안

10월 27일, 방향성 · 비전 제시
18대 중앙종회 잔여 임기 1년
올해 말 '정법구현 3050' 계획


정법회가 18대 중앙종회의 잔여 임기 1년을 "종단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회장 탄원 스님)가 종도 참여를 확대하고 종단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과 종헌·종법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과 종책위원장 대진 스님, 간사 설도 스님, 회원 혜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법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법회는 18대 중앙종회의 남은 1년 여의 임기를 "한국불교 혁신과 종단 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정법회가 제시한 '한국불교 혁신과 종단 발전 방향'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종헌·종법 구조 개편 △중장기 비전 '정법구현 3050' 수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선거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직·간선제의 장단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행 선거인단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선거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탄원 스님은 "2026년에 실시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혁신적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이자 한국불교의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선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법회는 현재 종단에서 추진 중인 징계자 사면 등 제반 행정절차도 충분한 시간과 객관적 사실 검증,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원 스님은 "징계자 사면 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졸속 절차'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면밀한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법회는 종헌·종법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앙종회 각 특별위원회의 개별 법안 발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종헌·종법 개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법회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비전 '정법구현 3050'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탄원 스님은 종책모임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탄원 스님은 "정기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종책모임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오늘 정법회의 제안들도 실현될 수 있다. 종회의원 모두가 통합의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건강한 중앙종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27일 신임 집행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임 집행위원 명법 스님, 지현 스님, 자운 스님, 본부장 성행 스님, 향산 스님, 준한 스님, 사무총장 덕유 스님.

조계종 민추본, 신임 집행위원 위촉

성행 스님, 10월 27일 위촉장 수여
'한반도 평화 결의안' 환영 성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10월 27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신임 집행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본부장 성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향산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청계사 총무국장 명법 스님, 영천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재무국장 자운 스님, 부산 붓다선원 주지 지현 스님 등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행 스님은 "그동안 단절됐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민추본이 역할이 크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물꼬가 트이면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추본은 그간 활동으로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만큼, 신임 집행위원들이 이를 잘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준비된 자세로 활동하다 보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28일, 김영배 국회의원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0월 10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한 환영과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오랜 시대적 과제인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조속히 합의해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감사 후보에 재안·성원 스님 추천

10월 27일, 조계종 종관위
격론 거쳐 투표 끝에 결정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각진 스님)는 10월 27일 제133차 회의를 열고 현 감사인 도림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감사) 후보 추천의 건'을 논의했다.〈사진〉

그간 동국대 감사 후보자는 합의에 따라 복수로 추천해 왔지만 이날 후보자로 현 감사 도림 스님과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거론돼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비공개 투표가 진행됐고,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이 감사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종관위가 복수 추천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는 11월 5일 개원하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동의 절차를 걸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2025년 종립교육기관 운영현황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승가대와 동국대 등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할 예정이며, 일정 조율은 위원장 각진 스님과 부위원장 탄원 스님, 간사 각연 스님에게 위임했다. 김내영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알빈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